

의안번호	2209797
의 퇴 인	서지영 의원
회 답 일	2025.4.28.
추 계 번호	25C2159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방송·신문·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이 아동학대보도 관련 권고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원 (연평균 2,000만원)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아동학대보도 실태조사 (안 제29조의9)	50	-	-	50	-	100	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9조의9(아동학대 보도 실태조사)	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·신문·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이 제29조의8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※ 제29조의8(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29조의9 (아동학대보호도 실태조사)	○	-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아동학대보호도 실태조사 비용은 유사사례인 보건복지부의 “장애인정책 모니터링” 사업¹⁾을 준용하여 추계
- 아동학대보호도 실태조사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조사·연구하고, 추가적인 조직 및 인력의 확대는 없는 것으로 가정
- 공포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보호도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해당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총 1억원(연평균 2,000만원)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
 -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, 2025년 예산은 5,000만원임
 - 추계기간 동안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1) 장애인정책 및 언론 등을 모니터링하여 장애인권익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을 조사·분석하고 있으므로, 아동학대보호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점검하는 실태조사와 유사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아동학대보호 실태조사 (안 제29조의9)	50	—	—	50	—	100	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assembly.go.kr